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생활보장과-70 87 |
| 결재일자 | 2016.2.24. |
| 공개여부 | 부분공개(6) |
| 보도여부 | |

| 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장애인복지팀장 | 생활보장과장 | 주민생활국장 |
| 길재호 | 유숙희 | 이승하 | 전결 02/24 강대형 |
| 협 조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**장애부모 역량강화교육
지원 계획**

2016.02.24.

**강 북 구
(생활보장과)**

장애부모 역량강화교육 지원 계획

장애인과 그 부모가 함께 몸펴기 운동에 참여하여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한 삶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.

1

추진방향

- 몸펴기 생활운동을 통하여 구부러진 몸을 바로 펴고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고, 마음도 함께 열게 되어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고,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4월 ~ 10월
- 사업대상 : 장애자녀가 있는 강북구 거주 학부모 (15명 내외)
- 운영단체 : 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(회장 정재숙)
- 사업내용 : 몸펴기 운동을 통한 장애가족 건강 교육
- 소요예산 : 총1,500천원(구비 1,200천원, 자부담 300천원)

3**세부 추진계획**

| 일정 | 추진개요 | 세부추진내용 |
|-----|-------|--|
| 3월 | 사전 준비 | 준비회의 |
| 4월 | 몸펴기운동 | 1회 몸펴기생활운동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2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생활 속 바른자세 |
| 5월 | 몸펴기운동 | 3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생활습관병의 이해 4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통증의 원리와 해결 5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어깨/상체관련 질환의 이해 6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허리/골반질환의 이해 |
| 6월 | 몸펴기운동 | 7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발/발목 관련질환의 이해 8회 몸펴기생활운동 실습, 생활속 증상 이해하기 |
| 10월 | 평가 | 평가회의 |

4**기대효과**

- 장애 자녀들 중 많은 경우에 잘못된 식생활(편식)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을 가지게 됨. 몸펴기 생활운동을 통해 몸을 펴고 굳어 있는 근육과 오장육부를 풀어주어 통증을 해소하고 온몸의 순환과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 할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됨. 장애 부모의 경우도 양육부담 등으로 인해 비만과 스트레스로 각종 만성 질환과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. 몸펴기 운동을 통해 바른 자세를 배우고 유지하여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됨.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서로 건강관리의 지원자 역할을 하도록 함.
- 기본운동의 지속적 실습을 통하여 장애자녀 뿐만이 아니라 타 가족 구성원 및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.

5**소요예산**

사 업 비 : 1,500천원 (보조금 1,200천원 / 자부담 300천원)

예산과목 : 생활보장과,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복지지원,
장애인편익증진, 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

세부내역

[단위 : 천원]

| 지출항목 | 금 액 | 산 출 내 역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| 1,500 | 보조금+자부담 |
| 보 조 금 | 1,200 | |
| 강 사 비 | 880 | 110,000원 × 8강(1강 2시간) |
| 장소사용료 | 160 | 20,000원 × 8(회) |
| 홍 보 비 | 20 | 실내배너 1식 × 20,000원 |
| 회 의 비 | 140 | 다과비 등 7,000원 × 10명 × 2회 = 140,000원 |
| 자 부 담 | 300 | |
| 재 료 비 | 300 | 몸펴기운동 도구 30,000원 × 10세트 |

붙임 1. 단체현황 1부.

2. 협약서(안) 1부. 끝.

붙임 1>

□ 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단체현황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단체사무소 소재지 | | |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19길 6-11 | | | | |
| 대표자 | 정재숙 | 주 소 |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7, 403동 1002호 (번동, 주공아파트) | | | | |
| | | 생년월일 | 72.10.26. | 전 화 | ***** | | |
| 설립목적 | 장애인과 부모 등 가족을 지원하고, 장애인의 교육, 복지, 노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과 정책적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 | | | | |
| 단체연혁 | 2003. 장애인참교육강북부모회 자조모임 시작 2006.04.17. 장애인참교육강북부모회 준비위원회 구성 2007.06.17. '함께가는 북부장애인부모회'(강북,노원,도봉)로 창립 2008.09. 강북지역복지네트워크 참여 2008.11.25. 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 창립총회 2008.12.03. (사)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회 등록 2009.~2013.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사업수행(장애인 부모 모성지원 및 역량강화) 2011.03. <함께웃는가게>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선정 2012. 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단체 승인 2013. 서울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수행 <발달장애인평생교육-아우름> | | | | | | |
| 회 원 | 총 회원 | 100명 | | 임원 | 8명 | 일반회원 | 92명 |
| 임원 및 근무인력 인적사항 | 직 위 | 성 명 | 생년월일 | 직 업 | 주 소 | | 전 화 |
| | 회장 | 정재숙 | 72.10.26. | | 오현로 207, 403동 1002호 (번동, 주공아파트) | | ***** |
| | 부회장 | 이주란 | 71.01.24. | | 오현로 207, 408동 106호 (번동, 주공아파트) | | ***** |
| | 사무국장 | 강소연 | 70.08.29. | | 도봉로10라길 5 (미아동) | | ***** |
| | 사무장 | 곽영미 | 68.10.24. | 학원장 | 솔샘로 174, 134동 804호(미아동, SK북한산시티아파트) | | ***** |
| | 정책국장 | 방진숙 | 69.02.17. | | 솔샘로 174, 109동 1403호(미아동, SK북한산시티아파트) | | ***** |
| | 정책국장 | 신명순 | 68.12.05. | | 인수봉로28나길 33 (수유동) | | ***** |
| | 교육국장 | 김은정 | 71.03.26. | | 인수봉로 308, B동 101호 (수유동, 신경스위트빌라) | | ***** |
| | 교육국장 | 이은경 | 70.01.10. | | 삼양로139가길 43-12, 401호(우이동) | | ***** |
| | 고문 | 최미경 | 67.02.24. | 약사 | 한천로159길 8 105동801호 (수유동, 래미안수유아파트) | | ***** |

붙임 2>

「2016년 장애부모 역량강화교육」 사업 협약서

강북구와 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(이하 “부모회”라 한다)는 「2016년 장애부모 역량강화 교육」 사업을(이하 사업이라 한다)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강북구”가 사회복지보조사업인 「2016. 장애부모 역량강화교육」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“부모회”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개요) 이 협약에 의하여 “강북구”가 “부모회”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, 사업기간,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업의 명칭 : 2016년 장애부모 역량강화 교육 사업
2. 사업의 내용 : 장애자녀를 둔 부모 대상 역량강화 교육 운영
3. 협약기간 : 협약일 ~ 2016.12.31.
4. 2016년 지원금액 : 금1,200천원(금일백이십만원)
5. 운영단체 : 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

제3조(사업범위) “부모회”는 「2016 장애부모 역량강화 교육사업」의 목적에 맞도록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장애부모 가족지원과 역량강화 교육

제4조(사업계획) ① “부모회”은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“강북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선정관련 제출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)

② “부모회”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강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실시의 원칙) ① “부모회”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.

- ② “부모회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되며, 사업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운영규정에 정한 예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“부모회”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(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)을 엄수하여야 한다.
- ④ “부모회”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제6조(사업비의 관리) “부모회”는 「2016 장애부모 역량강화 교육사업」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보조금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7조(사업비의 지급, 집행 등)**
- ① “강북구”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를 “부모회”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.
 - ② “부모회”는 사업비를 “강북구”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, 지방재정법,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 - ③ “부모회”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를 집행해야 한다.
 - ④ “부모회”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.

제9조(사업실적 제출) “부모회”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,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“강북구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사업비 정산 및 반환)**
- ① “부모회”는 “강북구”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최종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“부모회”의 사업비 정산서는 사용내역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,

은행 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, “강북구”는 “부모회”의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·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“부모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“강북구”는 “부모회”에게 제2항의 수정·보완요구 결과,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당한 집행이 확인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“부모회”에게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“부모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“부모회”는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“강북구”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은 반납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계법령 등의 준수) “부모회”는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“강북구”는 사업과 관련한 “부모회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② “강북구”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“부모회”에게 요구하거나 “강북구”의 소속직원 또는 “강북구”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부모회”의 업무상황·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“부모회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손해배상 등) ① “부모회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부모회”가 귀책사유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“부모회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강북구”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부모회”는 이를 “강북구”에게 지정기한 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4조(협약의 해지) ① “강북구” 또는 “부모회”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(이하 “해지 등”이라 한다)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“강북구”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의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부모회”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
2. “부모회”가 사업수행 중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
3. “부모회”가 사업을 하도급 한 때
4. “부모회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“강북구”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때
5. “부모회”가 사업추진을 포기한 때

③ “강북구”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“부모회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“부모회”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“강북구”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⑤ “강북구”는 “부모회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 및 해석) ① 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을 준용한다.

②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“강북구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6조(협약의 효력 등)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강북구”와 “부모회”는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③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“강북구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.

2016년 2월 일

“강북구” 주소 :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(인)

“부모회” 주소 : 서울 강북구 노해로19길 6-11
(사)함께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장 (인)